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04일

신당제5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철	최 *희 1965-02-25	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39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04
이 *철	이 *자 1941-01-1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04